

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

지정번호 제 호	접수일	처리기간 5일 (검사분야 또는 대상기기 변경의 경우에는 20일)
----------	-----	--

☐ 간이측정기 성능인증	☐ 정도검사	☐ 검정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신청인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	상호(사업장 명칭)	
	주소(사업장 소재지) (전화번호 :)	

변경신청 내용	변경내용
	변경사유

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 후단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.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⑤~⑥의 기재사항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고,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.

처리 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 : 국립환경과학원(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 담당부서)